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 추가 〉
■ 염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084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염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084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 추가(안 제7조제9호 신설)	3

□ 염태영의원 대표발의(221808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염태영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6. 4. 3.
3. 회 부 일 : 2026. 4.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철도공단을 사업 시행자에 포함하려는 바, 이에 맞추어 「국가철도공단법」에 국가철도 공단의 해당 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철도공단의 사업범위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철도공단의 사업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추가함(안 제7조제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염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 추가
(안 제7조제9호 신설)

개정안은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8. (생략) <u><신설></u> 9. · 10. (생략)	제7조(사업) ----- ---. 1. ~ 8. (현행과 같음) 9. 「 <u>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u> 」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 10. · 11. (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법 제7조¹⁾에서는 국가철도공단의 사업범위를 ‘철도시설의 건설

1)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 11. 26., 2023. 4. 18., 2024. 1. 23.>

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2.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 연결 철도망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3.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관리 및 지원
4.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철도 부근 지역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

및 관리’,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 연결 철도망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8.27.)에서 의결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제20269호)²⁾에서는 국가철도공단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³⁾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은 ‘철도지하화사업’과 ‘철도부지개발사업’으로 구분되며, 철도지하화사업은 철도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을, 철도부지개

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한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개발·운영

5. 건널목 입체화 등 철도 횡단시설사업
6.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 대책의 집행
7.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 7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에 대한 관리·감독업무의 지원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철도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10.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9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
- 2) 동 개정안의 연계 법안인 염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7호)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의안번호 제20269호)으로 본회의에 부의함.
- 3)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제20269호) 중 관련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업시행자) 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9조(사업시행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 설>	1.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출자받거나 출자받기로 예정된 자
<신 설>	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발사업은 철도부지 및 철도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공공주택사업·도시개발사업·역세권개발사업 등을 의미함4).

국가철도공단은 현행법에 따라 ‘철도 시설의 건설 및 관리’(법 제7조 제1호)사업과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 등의 개발·운영’(법 제7조제4호)사업을 할 수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의 사업으로 추가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은 철도를 지하에 건설하고 철도 상부 부지를 개발한다는 점에서 국가철도공단이 현행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본회의에서 의결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제20269호)이 국가철도공단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규정한 것은, 현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기조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대신 철도시설 건설 및 역세권 개발 등에 전문성을 보유한 국가철도공단을 활용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임.

4)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이란 철도지하화사업과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철도지하화사업”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 중 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에서 고시된 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철도부지개발사업”이란 철도부지 및 철도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 나.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명시함으로써 국가철도공단의 해당 사업 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국가철도공단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규정하려는 본회의 의결 대안(의안번호 제20269호)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체계·자구 측면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함. 먼저, 국가철도공단의 사업범위에 새로 추가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으로 인용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7조제9호를 신설함에 따라 현행 제9호 및 제10호의 인용조문도 이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8. (생략) <u><신설></u>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 <u>제7호의2 및 제8호</u> 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제7조(사업) ----- -----. 1. ~ 8. (현행과 같음) 9. 「 <u>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u> 」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제7조(사업) ----- -----. 1. ~ 8. (현행과 같음) 9. 「 <u>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u> 」 제2조제3호에----- 10. 제1호부터 제7호까지, <u>제7호의2, 제8호 및 제9호</u> 의 사업에 딸린 사업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10. 제1호부터 제7호까지, <u>제7호의2, 제8호 및 제9호</u> 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1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u>제7호의2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u> 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

또한, 시행일과 관련하여, 개정안의 시행일을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제20269호)의 시행일⁵⁾과 일치시키는 것이 사업시행자 지정과 국가철도공단 사업 수행 근거 간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보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국가철도공단은 철도건설 및 역세권개발 등 철도분야 전문 공공기관으로, 체계적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의함.

문의처

02)6788-5582

5)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제20269호)은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8.27.)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임